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786
----------	-------

발의연월일 : 2026. 8. 26.

발 의 자 : 백혜련 · 박희승 · 이광재
이수진 · 윤후덕 · 남인순
김교홍 · 신정훈 · 김영진
이강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범죄 또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범죄인의 교정교화를 돕고, 범죄로부터 일반 국민을 보호하고자 함.

그러나 최근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스토킹을 저지르다 결국에 살인까지 저지른 사건이 발생함. 또한, 전자발찌 착용명령을 부과받은 피부착명령자들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험범죄자에 대한 별도 조치가 부재하여 문제가 지적됨.

이에 피부착자의 범죄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출된 위험도가 임계점에 도달한 고위험 피부착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1대1 전담 감시 등 특별관리가 개시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5조의3, 제15

조의4, 제15조의5 및 제33조의3 신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피부착자의 위험도 평가 및 관리)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지도·감독을 위하여 전자장치 위치추적시스템을 활용하여 피부착자의 재범 위험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등급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제9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 이력 및 그 중대성
2. 피부착자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약식명령에 기초하여 확인된 범죄 전력
3. 피부착자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 다만, 해당 사실은 위험도 평가의 보조적 요소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불기소처분이 확정되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즉시 평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태도 및 이수 여부
5. 피해자 또는 그 주변인에 대한 접촉 시도 여부

6. 그 밖에 피부착자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전담 보호관찰관의 종합적 판단을 거쳐야 하며, 자동화된 시스템의 산출 결과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 결과 피부착자의 위험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이유를 피부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험도 등급의 구분 기준, 평가 주기, 평가 방법 및 관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4(고위험 피부착자에 대한 집중관리)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 결과 피부착자의 위험 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고위험 피부착자”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집중관리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 및 면담 횟수 증가
2. 전자장치 위치추적시스템을 활용한 동선의 집중 모니터링
3. 제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 구역 또는 제한된 주거지역의 변경을 위한 법원에 대한 신청
4. 관할 경찰관서에 대한 협력 요청 및 정보 공유
5. 그 밖에 재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집중관리 조치를 실시하기 전에 고위험 피부착자에게 그 사실과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발생이 급박하여 사전 통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조치 개시 후 지체 없이 통지할 수 있다.

③ 고위험 피부착자는 제1항에 따른 집중관리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호관찰소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고위험 피부착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집중관리 조치를 실시한 경우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집중관리 조치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5(고위험 피부착자에 대한 긴급 조치)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고위험 피부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인장을 발부받아 해당 피부착자를 구인할 수 있다.

1. 제9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피해자 또는 잠재적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협 행위를 하거나 접촉을 시도한 경우
3. 전자장치를 임의로 훼손하거나 그 기능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구인장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 판사는 청구를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구인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피부착자를 구인한 경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유치 허가 청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유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구인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3(위험도 평가를 위한 정보 연계) ①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은 피부착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제15조의3에 따른 위험도 평가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상호 연계하여 공유할 수 있다.

1. 피부착자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 및 그 죄명
2. 피부착자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약식명령의 내용
3. 피부착자와 관련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의 신고 접수 사실

4. 피부착자와 관련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 신고 접수 사실

5. 피부착자에 대하여 발령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률」 제8조에 따른 긴급응급조치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잠정 조치의 내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연계·공유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불기소처분이 확정된 사건의 수사 정보

2.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재판 정보

③ 제1항에 따라 연계·공유된 정보는 제15조의3에 따른 피부착자의 위험도 평가 및 제15조의4에 따른 집중관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계·공유된 정보를 해당 피부착자의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정보 연계·공유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절차 및 보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5조의3(피부착자의 위험도 평가 및 관리)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지도·감독을 위하여 전자장치 위치추적시스템을 활용하여 피부착자의 재범 위험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등급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u> <u>1. 제9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 이력 및 그 중대성</u> <u>2. 피부착자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약식명령에 기초하여 확인된 범죄 전력</u> <u>3. 피부착자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 다만, 해당 사실은 위험도 평가의 보조적 요소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불기소처분이 확정되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즉시 평</u>

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
수 태도 및 이수 여부

5. 피해자 또는 그 주변인에 대
한 접촉 시도 여부

6. 그 밖에 피부착자의 재범 위
험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때
에는 전담 보호관찰관의 종합
적 판단을 거쳐야 하며, 자동화
된 시스템의 산출 결과에만 의
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 결과 피부착
자의 위험 등급이 변경된 경우
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이
유를 피부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험도 등급
의 구분 기준, 평가 주기, 평가
방법 및 관리 절차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신 설>

제15조의4(고위험 피부착자에 대한 집중관리)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 결과 피부착자의 위험 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고위험 피부착자”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집중관리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 및 면담 횟수 증가
2. 전자장치 위치추적시스템을 활용한 동선의 집중 모니터링
3. 제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 구역 또는 제한된 주거지역의 변경을 위한 법원에 대한 신청
4. 관할 경찰관서에 대한 협력 요청 및 정보 공유
5. 그 밖에 재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집중관리 조치를 실시하

기 전에 고위험 피부착자에게 그 사실과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발생이 급박하여 사전 통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조치 개시 후 지체 없이 통지할 수 있다.

③ 고위험 피부착자는 제1항에 따른 집중관리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호관찰소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고위험 피부착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집중관리 조치를 실시한 경우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 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집중관리 조치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5(고위험 피부착자에 대한 긴급 조치)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고위험 피부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인장을 발부받아 해당 피부착자를 구인할 수 있다.

1. 제9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피해자 또는 잠재적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협 행위를 하거나 접촉을 시도한 경우

3. 전자장치를 임의로 훼손하거나

<신 설>

나 그 기능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구인장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 판사는 청구를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구인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피부착자를 구인한 경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유치 허가 청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유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구인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제33조의3(위험도 평가를 위한 정보 연계) ①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은 피부착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제15조의3에 따른 위험도 평가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상호 연계하여 공유할 수 있다.

1. 피부착자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 및 그 죄명
2. 피부착자에 대한 법원의 확

정판결 또는 약식명령의 내용

3. 피부착자와 관련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의 신고 접수 사실

4. 피부착자와 관련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 신고 접수 사실

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긴급응급조치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잠정조치의 내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연계·공유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불기소처분이 확정된 사건의 수사 정보

2.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재판 정보

③ 제1항에 따라 연계·공유된 정보는 제15조의3에 따른 피부착자의 위험도 평가 및 제15조의4에 따른 집중관리 목적 외

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계·공유된 정보를 해당 피부착자의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정보 연계·공유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절차 및 보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